

고 시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-39호

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경인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

○ 지정 해지내역

별정우체국	관할우체국	피지정인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해지 사유
장안우체국	화성우체국	이교회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48	피지정인의 지정해지 신청

○ 지정 해지일자 : 2023. 12. 31.